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(3공구)]

□ 점검일시 : 2017.09.06 (수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윤원섭, 정진혁

○ 가설통로 안전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은 복공설치 작업중으로 용접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 중간에 개구부가 있어 높이는 높지 않으나 빠질 경우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복공 완료전까지 발판 등으로 안전통로 확보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56조(작업발판의 구조)



○ 낙하·비래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 백호 작업자가 미사용 중인 버킷과 브레이커를 낙하 단부에 거치하여 장비 교체 과정에서 버킷과 브레이커가 낙하할 수 있고, 안전핀을 체결하기 위해 장비작업자가 고소상단으로 올라갈 경우 추락재해의 위험도 있으므로 낙하 및 추락 위험이 없는 개소에 거치하도록 재발방지 교육요망

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(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),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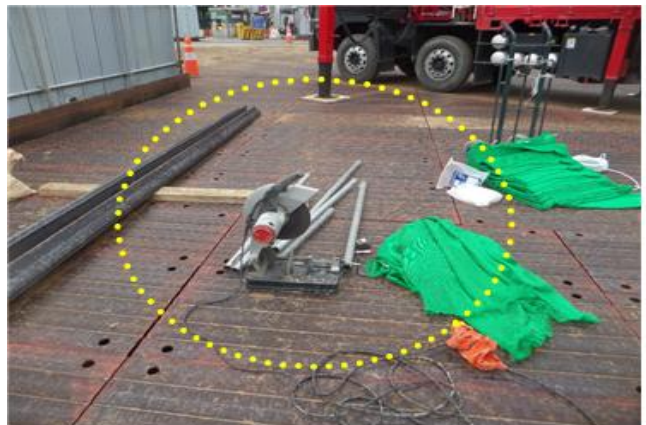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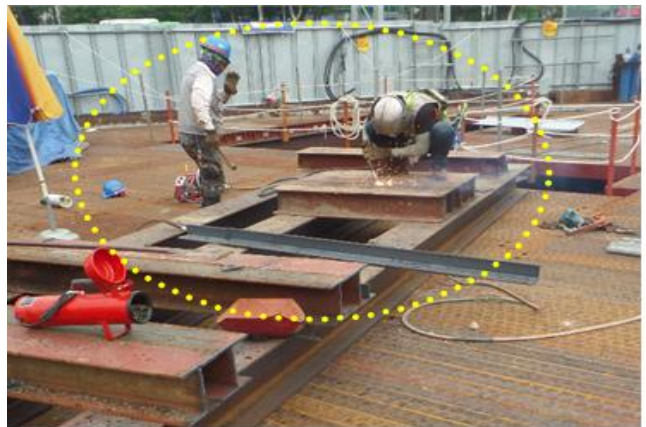
○ 전도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은 복공설치 작업중으로 가설통로에 등근 강관자재가 구름방지 없이 적치 되어 있어 작업자 통행시 밟게될 경우 전도사고의 위험이 있으며, 굴러 복공이 미설치된 개소로 구름 경우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작업통로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리요망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 복공 및 안전난간 설치중인 작업장에 용접 및 강재를 절단하는 고속절단기 작업시에는 근접거리에 소화기를 배치하고 작업장소에 적합한 불꽃비산방지 조치를 해야하나, 용접 및 고속절단기 작업장 모두 근접거리에 소화기가 미배치 되어 있으며 불꽃비산방지 조치도 없는 상황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작업자 교육요망
 ※ 건설안전 기본지침(개정) 공통-021(용접작업 및 용접기), 026(고속절단기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도시철도사업부)

- 111정거장 작업장에 설치하기 위해 반입된 분전반은 현재 수전이 안된 상태로 콘센트 용량(16A)에 비해 누전차단기의 용량(30A)이 높아 16A~30A 사이의 전기기구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콘센트의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용량으로 교체 후 사용요망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(전기 기계/기구의 적정설치 등)

